

동물보호법 어떻게 바뀌었나?

# 실험동물 보호 · 윤리적 취급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해야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위한 동물사용 규정, 관행적 사용시 위반할 수 있어  
품목등록시험기관 잘 숙지해야, 유기동물 및 맹도견 · 안내견 등 실험금지

**사** 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동물보호법이 오랜 개정기간을 거쳐 드디어 시행되었다. 지난해 1월 26일 공포된 동물보호법이 2008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물보호법의 대상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의미한다. 동물학대 금지, 반려동물 분야, 농장동물 분야 및 실험동물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동물보호법은 사실 애완용 동물을 키우거나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동물을 사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

행대로 행동한다면 법을 위반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다음의 주요 내용, 특히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품목등록시험기관에서는 잘 알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적정 사육관리 · 동물학대 금지

먼저 법 [제 6조]는 동물에게 적정한 사육관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①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 보장 ②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히 치료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 ③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 ④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성명·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 ⑤등록대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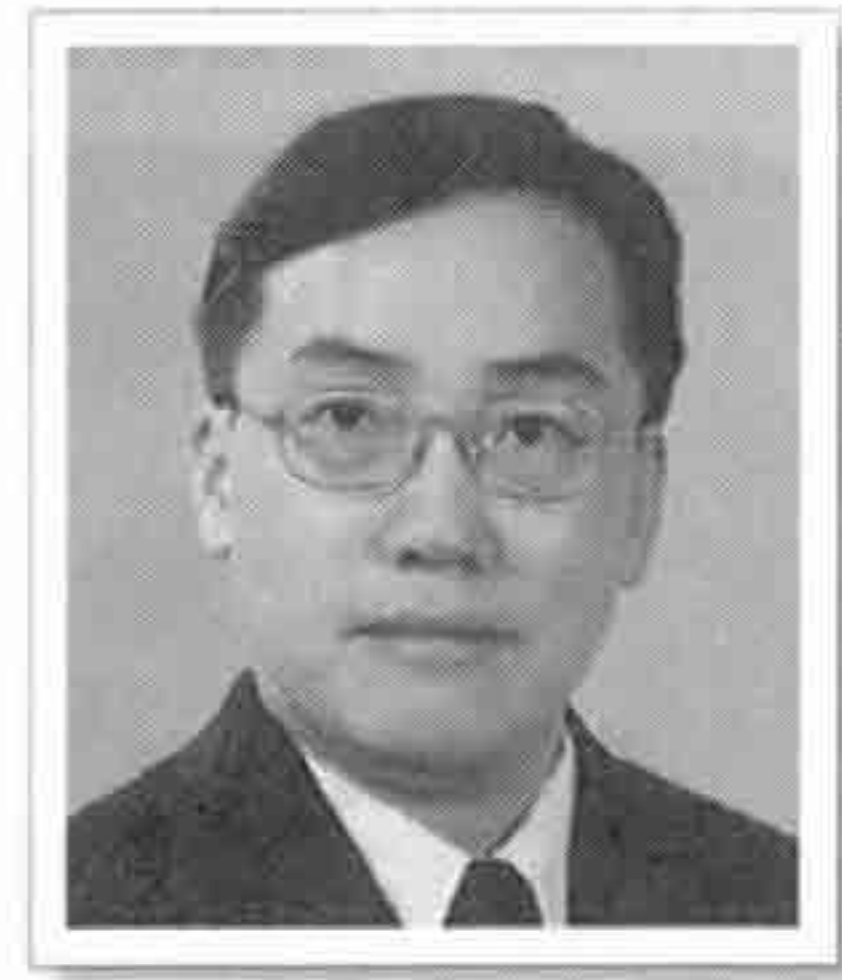
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농림수산 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 ⑥시·도지사는 등록대상 동물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 7조]는 동물학대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①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②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③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제 13조]는 동물실험의 원칙을 ①동물실험은 인류 복지의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②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③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④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⑤동물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

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⑥그리고 누구든지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과 맹도견·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종)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하정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안전성평가본부장

### 실험동물 보호·윤리적 취급, 투명 행정도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연구기관에서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제 14조]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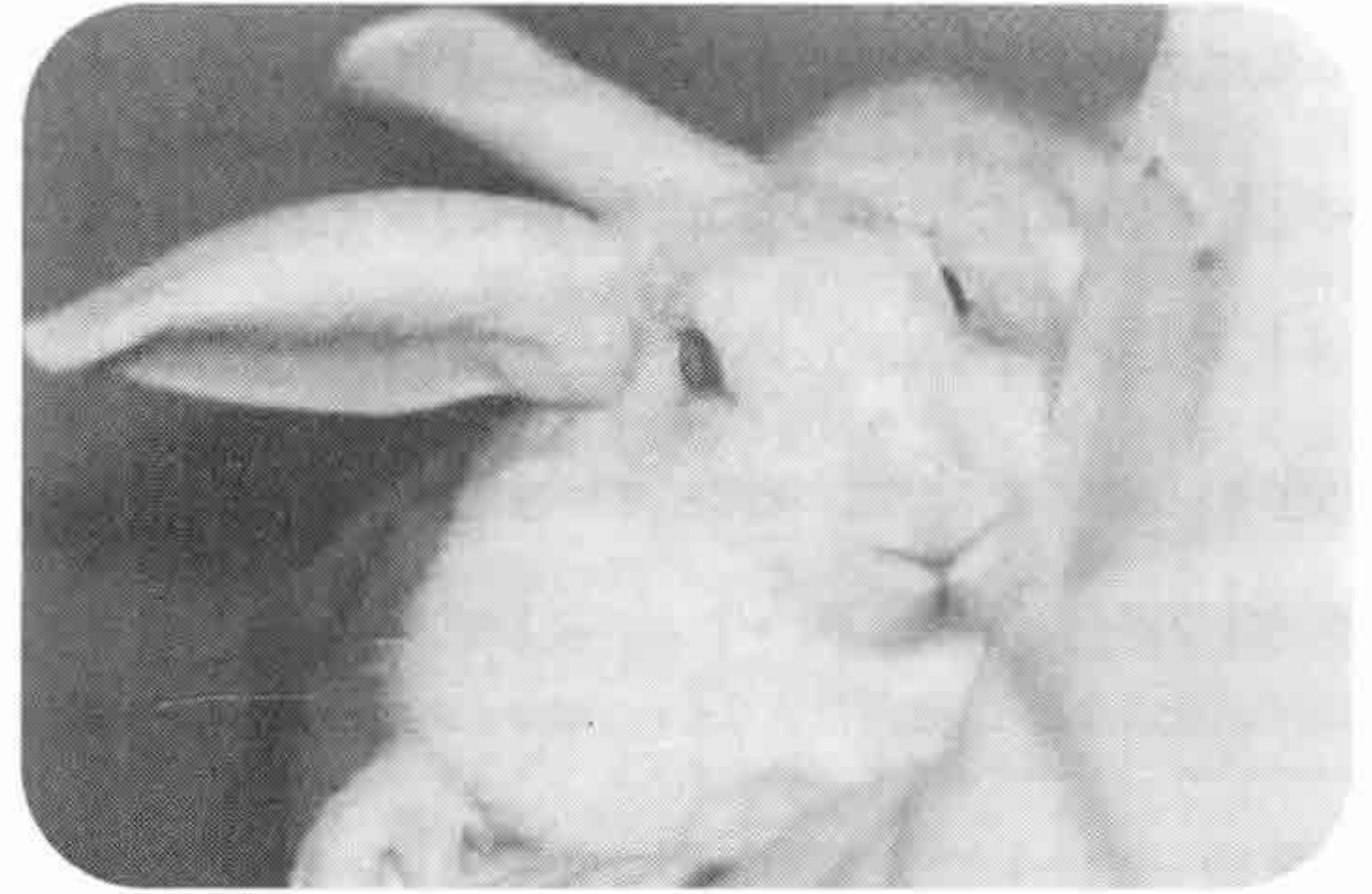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



■ 대표적 실험동물



쥐



토끼

동물보호법은 사실 애완용 동물을 키우거나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동물을 사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행대로 행동한다면 법을 위반할 수가 있다.  
 특히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품목등록시험기관에서는  
 잘 알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 ③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물보호법 어떻게 바뀌었나?

[제 24조]에서는 투명 행정 및 동물보호·복지분야의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동물보호 관련 사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다음의 정보 및 수집된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유기동물 및 보호시설과 위탁보호 시설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판매업 등의 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 벌칙·과태료의 다양한 규정 포함

벌칙에 관해서는 [제 25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2. 제14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②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판매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과태료에 대해서는 [제 26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장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
  2. 제6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처분청”이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끝으로 동물보호법에서는 상기 내용이외에도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구체화, 동물보호감시관/명예감시관제, 피학대 동물의 동물보호전문기관/치료기관 인도조항,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 장묘업 등록제, 동물의 도살방법 구체화, 유기동물처리, 동물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및 동물운송 규정 등도 포함하고 있다. Y